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공고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900MHz대, 2.1GHz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800MHz 대역

- 이동국송신(상향) : 839~849MHz(10MHz)
- 기지국송신(하향) : 884~894MHz(10MHz)

(2) 900MHz 대역

- 이동국송신(상향) : 905~915MHz(10MHz)
- 기지국송신(하향) : 950~960MHz(10MHz)

(3) 2.1GHz대역

- 이동국송신(상향) : 1920~1940MHz(20MHz)대역 중 10MHz
- 기지국송신(하향) : 2110~2130MHz(20MHz)대역 중 10MHz

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의 할당대상 대역중 사업자당 20MHz폭

※ 할당대역폭에는 간섭 보호를 위한 주파수도 포함되며 할당신청법인이 선택한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세부보호대역을 정함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1) 800MHz/900MHz 대역 : 2011.7.1일자로 할당함

(2) 2.1GHz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 800MHz대역(총 20MHz폭 : 송·수신 각 10MHz폭) : 2,514억원

○ 900MHz대역(총 20MHz폭 : 송·수신 각 10MHz폭) : 2,514억원

○ 2.1GHz대역(총 20MHz폭 : 송·수신 각 10MHz폭) : 1,064억원

※ 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보증금을 할당신청시 납부하여야 함

※ 2.1GHz대역의 할당대가는 2010.5.1일자 할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할당대가이며 할당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로 산출하여 정산함

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7호(“10.2.22)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4. 주파수 이용기간

가. 800MHz/ 900MHz 대역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나. 2.1GHz대역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6.12.3일까지로 함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 (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으로 하되, 할당공고 당시 이미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이동통신 역무에서 운용중인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현재의 CDMA/WCDMA → OFDMA 등)을 도입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4G 기술방식은 승인요건에 무관하게 활용 가능

※ 승인요건 : ① WiBro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10.2.9) 사업자의 이행계획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행시

② 비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

※ 승인신청 : ① WiBro사업자는 '10년 WiBro 투자실적, '11년 투자계획 및 증빙 서류(장비계약서 등)를 신규 전송방식 승인신청시 제출

② 비WiBro 사업자는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6개월 전까지 주파수부족에 대한 검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검증결과를 신규 전송방식 승인 신청시 제출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800MHz/900MHz대역은 800MHz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가. 할당 조건 및 제재 조치

- (1) 준수 의무 :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 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 기지국 설치기준 >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 이내 15% 이상	5년 이내 30% 이상
800/900MHz대역	5,400국	810국	1,620국
2.1GHz대역	7,400국	1,110국	2,220국

-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

(2) 제재 조치

-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

< 제재 조치(안) >

- ◇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10%씩 단축 (할당대가 반환 없음)
-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 자료제출 미이행시 : 이용기간 5%씩 단축

나. 손실보상 비용 납부

- 900MHz대역을 할당받은 법인은 전파법 제7조에 따라 900MHz대역 기존 무선국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보상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통보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다. 간섭보호 계획 제시

- 할당신청 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

8. 주파수대역의 배정방법

- 800/900MHz대역 : 대역구분 없이 하나의 신청대역으로 하며, 주파수 할당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 대역선택권을 부여함. 단 동점의 경우 합의 또는 추첨으로 정함
- 2.1GHz대역 : 할당대상법인은 연속된 20MHz(10MHz×2)폭을 제외하고 배정대역을 선택함

9. 주파수할당 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3월 31일까지
- IMT-2000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붙임 :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붙임]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 할당신청의 일반사항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은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 할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할당 신청서(서약서 포함) 1부
 2. 주파수이용계획서(원본 1부, 사본 20부, CD 1부)
 - ※ 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3. 기타 필요한 서류(할당대가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등)
-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첨부1]의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할당신청접수

- 주파수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한 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할당신청적격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과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할당공고 사항에 대한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보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신청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심사기준

-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첨부 2]와 같다.
- 신청법인의 자격 등 신청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금의 납부

- 할당신청자는 전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할당신청 시 납부 증거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보증금은 현금(정보통신진흥기금 납부계좌 : 한국은행 089720)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심사방법

-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자격으로 결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첨부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법인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을 선정한다.

□ 주파수대역 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할당주파수대역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동점인 사업자간 합의 또는 추첨을 통해 할당주파수대역을 배정한다.

□ 심사결과 통보

- 할당 심사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당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할당신청법인에 통보한다.

- 할당대상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맞추어 할당 대가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할당대상법인은 전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최초납입분)할당대가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 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800/900MHz대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납부시기에 맞추어 할당대가를 납부한 후 별도로 (최초납입분)할당대가납부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심사에서의 차점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 통지서(별첨 < 양식 9 >)를 교부한다.

□ 기타(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할당신청서류는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첨부 1]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첨부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별첨] 제출서류양식

[첨부 1]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I.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할당신청서는 별첨 <양식 1>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첨 <양식 2>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I.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요약문

주파수이용계획서 제1권 내지 제3권 본문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첨 <양식 3>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공증된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할당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금융감독원의 확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소유비율에 관하여 구성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으면 사본을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성주주의 역할 및 책임 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구성주주의 역할과 책임 소재 및 구성주주간 협력계획(자본조달 및 경영협력 등)에 관해 합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범위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사업영역을 분야, 품질 및 향후 전문성 확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에 관하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등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1. 조직형태

할당신청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설립예정 법인은 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신상명세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 구성·운영

할당신청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 구성형태 및 수임권한 등과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 4>와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재무관련 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경우에는 별첨 <양식 6> 대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미실현손익, 채권/채무 등 내부거래가 제거된 재무제표(이하 '합산재무제표'라 한다)를 <양식 6-1>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합산재무제표상의 합병이전 개별회사의 재무수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고 합병법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합산금액에 오류가 없음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첨 <양식 4>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대주주,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그 근거자료와 함께 할당신청 접수일 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 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 4>와 <양식 5> 및 <양식 6>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 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위의 재무관련 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주요주주가 총자산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해 재무제표를 감사받은 후 별첨 <양식 4>와 <양식 5> 및 <양식 6>에 이기 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별첨 <양식 4>와 <양식 5> 및 <양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한 과거 4개년 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 및 증권감독기관 등에 보고한 서류(예, 미국 상장법인인 경우 10-케이(K) 리포트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양식 4>와 <양식 5> 및 <양식 6>의 기재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할당신청법인과 담당회계법인이 진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 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첨 <양식 4>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재무관련 서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할당신청일 현재로 자금 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권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60개월)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서비스 개요 및 시장분석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규모 분석, 예상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 등 분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 및 재무계획

제1절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시장분석 등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할당주파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고, 할당조건에 적합한 네트워크(기지국)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할당조건에 따른 기지국구축 수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첫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FA를 추가로 증설하는 경우의 FA 수

둘째, 동일대역의 기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신규 FA를 증설하는 경우의 FA 수(3년내 15% 구축의무실적에는 포함할 수 없으나 5년내 30% 구축의무실적 중 10%P에 한하여 인정)

다만, 중계용 기지국 및 소출력 기지국(웹토셀 등)은 기지국 구축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 및 구축 기지국 수를 연도별로 별첨 <양식 7>에 의해 작성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조달계획을 투자금액과 함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기타설비 등 소요 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가급적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이미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셀룰라, PCS, IMT-2000 (이하 “이동통신역무”라 한다.) 또는 휴대인터넷(WiBro)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미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할당신청법인으로서 현재 이동통신역무에서 운용중인 전송방식이 아닌 신규 전송방식(현재의 CDMA/WCDMA → OFDMA 등)으로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하는 승인요건에 부합하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0.2.9) 사업자의 이행계획에 따라 투자의 성실한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현황, 판단기준 및 예상시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10년 투자실적, ‘11년 투자계획 및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비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승인신청시 제출)

또한, 비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을 판단할 수 있는 현황, 판단기준 및 예상시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주파수부족 예상 6개월 전까지 주파수부족에 대한 검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검증결과를 승인신청시 제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에 대한 할당신청법인의 네트워크구축 및 투자계획과 계열회사의 네트워크구축 및 투자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 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이미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역무 또는 휴대인터넷 (WiBro)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 제공을 위한 할당신청법인의 자금조달계획과 계열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계획

무선인터넷망 개방, 개방형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개방형 서비스 창출계획 및 MVNO 활성화, 사물통신 네트워크 구축, 산업간 융합 서비스 등 산업전반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을 요금, 제공시기 등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이미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역무 또는 휴대인터넷 (WiBro)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와 이미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제공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 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무에 대한 할당신청법인의 서비스 제공계획과 계열회사의 서비스 제공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과 계획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국내산업 발전,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동반성장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 해외진출,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설립 예정법인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역무 또는 휴대인터넷(WiBro)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역무 제공을 통한 주파수 활용(망구축 및 투자실적 등)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영업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권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60개월)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네트워크 및 기술방식 개요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의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성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2장 네트워크 고도화 및 품질계획

제1절 네트워크 고도화

할당받은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발전방향과 이에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 실적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권에서 제시한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이미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역무 또는 휴대인터넷(WiBro)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에 대한 할당신청법인의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 계열회사의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서비스 품질목표

가입자당 제공속도 등 서비스 제공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공품질 목표는 가입자의 환경 및 제공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 대책

전체 트래픽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Cell간 간섭완화 기술, 안테나 기술, Cell내 Throughput 개선방안, Cell 경계에서의 User Throughput 감소대책 등 전체 시스템 용량의 향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된 트래픽을 시스템 내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소요량 분석 내용과 결과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과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간섭에 대비한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일반 기지국, 공용화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대책,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 계획을 기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시스템 구축 시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파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 그린 IT 기술의 적용 계획 및 에너지절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전체 기지국과 이 중에서 공용화 기지국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에 대한 구축 계획을 별첨 <양식 8>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관련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인력 확보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관 경력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기술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III.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제3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3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권별 분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할당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3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 (1) 물가 : 2009년 12월 31일 현재가격
-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 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년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과수이용계획서 작성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권 및 제3권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과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합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권·제2권·제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로 각각 나누어 왼쪽으로 철하여야 한다. 제1권 내지 제3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은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잠금장치가 있고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I.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적정성 1.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1.3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 1.4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 대책의 우수성 1.5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1.6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10점) 비계량(10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비계량(10점) 비계량(10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2.2.2 안정성 : 부채비율 2.2.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2.4 신용등급 2.3 심사사항 1, 3과 자금조달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7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비계량(6점)
3. 기술적 능력 (25점)	3.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3.2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3.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3.4 해당업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7점) 비계량(8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100점	-	100점

※ 과거실적, 자금조달계획 및 구체적 실현방안 등 주요 심사항목은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과거실적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은 대주주 및 설립예정 자본금(출자총액)의 5% 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II. 비계량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하려는 역무에 대한 시장분석의 합리성 ○ 연도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계획의 적정성 ○ 이동통신, 휴대인터넷(WiBro) 등 기할당 주파수 이용역무 네트워크 구축계획과의 부합성
	1.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 연도별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이동통신, 휴대인터넷(WiBro) 등 기할당 주파수 이용역무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1.3 녹색 방송통신 기술 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IT기술의 적용, 전자파 역기능 감소계획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우수성 ○ 기지국공용화,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계획 등 네트워크 구축시 환경보호 계획의 우수성
	1.4 트래픽 수용 및 전파 간섭 대책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트래픽 수요 예측의 적정성 ○ Cell간 간섭완화기술, 안테나기술 등 전체 시스템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계획의 우수성 ○ 전체 트래픽 예측량과 시스템 용량을 감안한 주파수 소요량 예측의 적정성 ○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 기지국, 중계기 등의 간섭대책의 우수성 및 간섭회피를 위해 강화할 각종 규격의 유효성
	1.5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인터넷망 개방, MVNO활성화, 사물통신 네트워크 구축, 산업간 융합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제공 계획의 우수성 ○ 요금 수준 및 서비스제공 시기의 적정성 ○ 이동통신, 휴대인터넷(WiBro)등 기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계획과의 부합성
	1.6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국내산업 발전, 고용 창출, 관련 산업 동반성장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실적(설립 예정법인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국민경제 기여실적)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국제표준화, 해외진출,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설립 예정법인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국민경제 기여실적) 및 계획 ○ 신청법인이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역무나 휴대인터넷(WiBro)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역무를 통한 주파수활용(망구축 실적 등) 및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 신청법인의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2. 재정적 능력(13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소요설비 투자,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3 심사사항 1, 3과 자금조달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3. 기술적 능력(25점)	3.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의 부합성 ○ 이동통신, 휴대인터넷(WiBro)등 기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 부합성
	3.2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 다양한 가입자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의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3.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우수성 ○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4 해당역무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	○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확보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III. 계량 평가심사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심사사항	심사항목	평가기준
2. 재정적 능력 (12점)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3점)	○ 총자산 세전이익율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100
	2.2.2 안정성(3점)	○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2.2.3 성장성(3점)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2.2.4 신용등급(3점)	○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재무구조(2.2)는 대주주 및 설립예정자본금(출자총액)의 5%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은 '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개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 법인의 지난 3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간 : 최근 3년

<신용등급>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간 : 할당신청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

□ 평가지표별 계산식

○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3점)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100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3점)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3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2.2.4 신용등급 (3점) : 해당법인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 점수 부여 방법

○ 수익성(총자산세전이익율) 및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점수부여 방법

- 할당신청 법인의 지표값 : A

- 최저점(60점) : $A \leq X - 3\sigma$

- 최고점(100점) : $A \geq X + 3\sigma$

- 취득점수(Y) : $X - 3\sigma \leq A \leq X + 3\sigma$

- $Y = 80 + 40 \times (A - X) / 6\sigma$

o 안정성(부채비율) 점수부여 방법

- 할당신청 법인의 지표값 : A
- 최저점(60점) : $A \geq X + 3\sigma$
- 최고점(100점) : $A \leq X - 3\sigma$
- 취득점수(Y) : $X - 3\sigma \leq A \leq X + 3\sigma$
- $Y = 80 + 40 \times (X - A) / 6\sigma$

o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최저점(60점)을 부여

o 신용등급별 점수부여 방법

신용등급	점수
AAA	3.00
AA+	2.93
AA	2.86
AA-	2.79
A+	2.72
A	2.65
A-	2.58
BBB+	2.51
BBB	2.44
BBB-	2.37
BB+	2.30
BB	2.23
BB-	2.16
B	2.09
CCC	2.02
CC	1.95
C	1.88
D	1.80

※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 부여

□ 가중치 배분

- 할당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지분율의 1.5배와 주요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가중치를 계산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중치 계산 산식 :

$$[(\text{대주주 지분율}) \times 150/S : (\text{2대 주주 지분율}) \times 100/S : \dots : (\text{n대 주주 지분율}) \times 100/S]$$

n :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수

$$S : (\text{대주주 지분율}) \times 1.5 + (\text{2대 주주 지분율}) + \dots + (\text{n대 주주 지분율})$$

-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 신용등급(2.2.4)의 경우 해당없음

□ 점수계산 방법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우선 해당법인 지표(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경우에는 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환산하고,

- 환산점수에 대해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신용등급>

-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

[별첨]

제출 서류 양식

<양식 1> 주파수할당신청서

<양식 2> 서약서

<양식 3>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양식 4>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양식 5>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양식 6> 과거 4개년 재무제표

<양식 6-1> 과거 4개년 합산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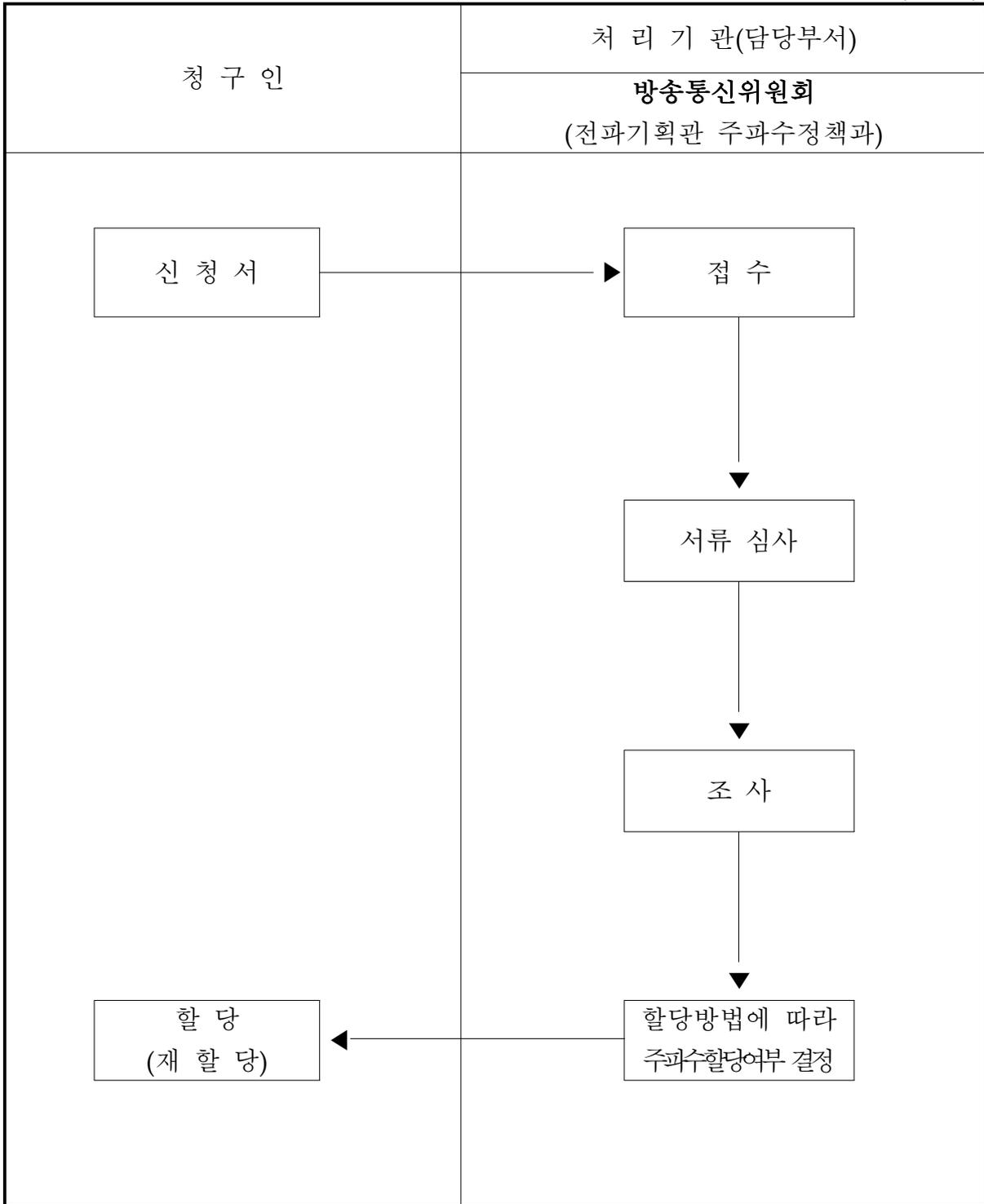
<양식 7> 연도별·지역별 역무제공 계획

<양식 8>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양식 9> 주파수할당 통지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양식 2> 서약서

본 법인은 할당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할당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전과범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한 할당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2. 본 법인은 할당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부터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설립예정 법인에 한함).
4.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년 월 일

법인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인)

대주주 : _____ (인)

주요주주명 : _____ (인)

·
·

주요주주명 : _____ (인)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인대표자가, 설립예정법인은 법인대표자와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기명날인함.

<양식 3>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1. 명칭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¹⁾	주식소유비율	유형 ²⁾	주요업종 ³⁾	외국인 ⁴⁾		비고 ⁵⁾
				주주명	지분율	
계	100%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이하 같다).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할당신청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전부 명시할 것.

<양식 4>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¹⁾				
안정성	부채비율 ²⁾				
성장성·활동성	매출액증가율 ³⁾				
신용평가등급					

1) (세전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2) (총부채/자기자본)×100 ※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은 합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5>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재무상태표항목	총자산				
	총부채 ¹⁾				
	자기자본 ²⁾				
손익계산서항목	매출액 ³⁾				
	경상이익(손실)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은 합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첨부 : 1. 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세무조정자의 확인필 자료)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항 목	회사명 No.	()회사		()회사		()회사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감가상각누계액)	21										
차량·선박·운반구	22										
(감가상각누계액)	23										
건설중인 자산	24										
기타유형자산	25										
(감가상각누계액)	26										
무형자산합계	27										
영업권	28										
개발비	29										
기타의무형자산	30										
기타비유동자산 합계	31										
보증금	32										
기타 비유동자산	33										
자산총계	34		100%		100%		100%		100%		100%

항목	회사명	No.	()회사		()회사		()회사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부채합계		35										
매입채무		36										
단 기 차 입 금	외국차관	37										
	금융기관차입금	38										
	유동성장기차입금	39										
	기타차입금	40										
	유동성사채	41										
기타유동부채		42										
고정부채합계		43										
사채		44										
장 기 차 입 금	외국차관	45										
	금융기관차입금	46										
	기타차입금	47										
퇴직급여충당부채		48										
기타부채성충당금		49										
기타고정부채		50										
자본총계		51										
자본금		52										
자본잉여금		53										
자본조정		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5										
이익잉여금		56										
부채및자본총계		57										
보고기간 종료일(결산일)		58										

※ 대조계정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되 해당계정과 금액을 주기할 것

항목	회사명 No.	()회사		()회사		()회사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이자수익	122										
배당금수익	123										
외환차익 ²⁾	124										
기타영업외수익	125										
영업외비용	126										
이자비용	127										
외환차손 ³⁾	128										
기부금	129										
기타영업외비용	13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31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132										
계속사업이익	133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134										
당기순이익	135										
회계기간	136										

1) 순매출액

2) 외화환산이익 포함

3) 외화환산손실 포함

※ 할당신청법인 구성주주의 과거 4개년 재무제표 작성시 주의사항

- (1) 재무제표 기재사항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 (2) 각 항목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치시킬 것.
- (3) 별첨 감사보고서와 본 양식상의 재무제표를 대조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을 본 양식 뒤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
- (4) 본 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본 재무제표에 준하여 작성할 것.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항 목	회사명 No	()회사		()회사		()회사		내부거래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회사	()회사	()회사	금액	구성비
								금액	금액	금액		
(감가상각누계액)	21											
차량·선박·운반구	22											
(감가상각누계액)	23											
건설중인 자산	24											
기타유형자산	25											
(감가상각누계액)	26											
무형자산합계	27											
영업권	28											
개발비	29											
기타의무형자산	30											
기타비유동자산 합계	31											
보증금	32											
기타비유동자산	33											
자산총계	34		100%		100%		100%					100%

항목	회사명	No.	()회사			()회사			내부거래			계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금액	금액		
유동부채합계		35											
매입채무		36											
단 기 차 입 금	외국차관	37											
	금융기관차입금	38											
	유동성장기차입금	39											
	기타차입금	40											
	유동성사채	41											
기타유동부채		42											
고정부채합계		43											
사채		44											
장 기 차 입 금	외국차관	45											
	금융기관차입금	46											
	기타차입금	47											
퇴직급여충당부채		48											
기타부채성충당금		49											
기타고정부채		50											
자본총계		51											
자본금		52											
자본잉여금		53											
자본조정		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5											
이익잉여금		56											
부채및자본총계		57											
보고기간 종료일(결산일)		58											

※ 대조계정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되 해당계정과 금액을 주기할 것

항목	회사명 No.	()회사		()회사		()회사		내부거래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회사	()회사	()회사	금액	구성비
								금액	금액	금액		
이자수익	122											
배당금수익	123											
외환차익 ²⁾	124											
기타영업외수익	125											
영업외비용	126											
이자비용	127											
외환차손 ³⁾	128											
기부금	129											
기타영업외비용	13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31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132											
계속사업이익	133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134											
당기순이익	135											
회계기간	136											

1) 순매출액

2) 외화환산이익 포함

3) 외화환산손실 포함

※ 최근 4년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한 법인의 과거 4개년 합산재무제표 작성시 주의사항

- (1) 재무제표 기재사항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 (2) 각 항목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치시킬 것.
- (3) 별첨 감사보고서와 본 양식상의 재무제표를 대조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을 본 양식 뒤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
- (4) 본 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본 재무제표에 준하여 작성할 것
- (5) 각 계정과목별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금액을 기입하고, '내부거래' 란에는 해당 법인의 내부거래금액을 기입하고, '계' 란에는 법인간 금액의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할 것.
- (6) 합병한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는 당해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합병재무상태표의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되 다만, 손익계산서는 합병손익계산서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내부거래는 제거)하여 기입할 것.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7> 연도별·지역별 역무 제공 계획

()년도

사업지역 ¹⁾	(신규) 역무제공 지역 ²⁾	사업지역대비 역무제공 지역 누적비율		구축 기지국수
		면 적	인 구	
전 체 대 상 지 역 ³⁾				

- 1) 사업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함
- 2) 역무제공 지역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제공하는 지역을 시, 군, 구 단위로 작성함
- 3) 전체 대상지역은 할당신청법인의 전체 사업구역을 의미함

<양식 8>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구 분		← 연도별 →	계
수 도 권	공용화 기지국 ¹⁾		
	환경친화형 기지국 ²⁾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³⁾		
	일반 기지국 ⁴⁾		
	소계		
광 역 시	공용화 기지국		
	환경친화형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일반 기지국		
	소계		
시 · 군	공용화 기지국		
	환경친화형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일반 기지국		
	소계		
기 타 지 역	공용화 기지국		
	환경친화형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일반 기지국		
	소계		
전체 기지국			
전체 공용화 또는 환경친화형 기지국 ⁵⁾			

1) 2 이상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지국

2)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는 기지국

3) 공용화 기지국이면서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기지국

4) 공용화 또는 환경친화형 기지국이 아닌 기지국

5) 지역별 공용화 기지국, 환경친화형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수의 합

